「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」 신구 조문 대비표

<특송물품 장치기간 개정 내용>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사 유
제4조(장치기간) 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6개월로 한다. 다만, 부산항·인천항·인천공항·김해공항 항역내의 지정장치장으로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2개월로 하며,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② ~ ⑧ (생 략)	제4조(장치기간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과 「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---------- ----------. ② ~ ⑧ (현행과 같음)	○ 소량, 다건, 개인화물 위주인 특송물품의 특성을 감안하고, 특송화물 물류신속화 및 장치장소별 상이한 장치기간 통일

<수의계약 개정 내용>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사 유
제22조(수의계약)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 할 수 있다. 1. 1회 이상 경쟁입찰에 붙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(단독 응찰한 경우를 포함한다)로서 다음 회의 입찰에 체감될 예정가격 이상의 응찰자가 있을 때 2.~5. (생 략) ② (생 략)	제22조(수의계약) ① ---------- ----------. 1. 2회 이상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 ---------- --- 2.~5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	○ 법 제210조제3항제1호와 일치('18년 서울세관 종합감사 결과 반영)